

第 64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 會 議 會 議 錄

( '96. 6. 20. ~ 6. 22. )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會計部)會員委育燦戲非壽忠 回 切 蒙

# 本會 會 類 會 類

(2000.05.01 ~ 05.31)

會員委育燦戲非壽忠

# 목 차

1996 • 6 • 통권 제48호

|                                       |    |
|---------------------------------------|----|
| I. 제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3  |
| II. 제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9  |
| III. 부 록                              |    |
| ▶ 의사일정(안) .....                       | 15 |
|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          | 17 |
|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    | 27 |
|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    | 31 |
| ▶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결의안 .....          | 35 |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6년 6월 20일 (목요일) 15시 02분

## 議事日程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3.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제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4.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사회: 의사과장 강인형)

(15시 02분 개식)

###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 제64회-제1차 ]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5시 04분 개의)

● 의장 박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6년 6월 12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 96-6호로 공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의 제출과 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96년 6월 12일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최근 정부의 소규모 지역교육청에 대한 통·폐합 추진 움직임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금일 전체 위원님 명의로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두개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제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5시 06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제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으로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과 위원발의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6월 21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조례안

(15시 07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의 수는 13인으로 하되, 교육감소속 공무원 중 10인의 당연직 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3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자원조달 및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지방교육재정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의안 2쪽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회의록 작성 및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제정사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조례안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충청북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 별첨2

(끝에 실음)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처리는 본도 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소

[제64회-제1차]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5시 10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대로 김정길, 이기수, 김광수, 신용철, 박동기 위원님 다섯 분을 위원으로 하여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5시 11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신용철, 안병일

두분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신용철, 안병일,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회동하시어 소위원회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 11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운.

○ 출석공무원 : 16명

|               |              |             |
|---------------|--------------|-------------|
| 교육감 김영세,      | 부교육감 송영식,    |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
|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 관리국장 신재철,    | 공보담당관 김홍묵,  |
|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
|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
|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 총무과장 고일영,    | 행정과장 이상찬,   |
| 재무과장 이기수.     |              |             |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 별첨2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6년 6월 22일 (토요일) 10시 01분

## 議事日程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2.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결의안
3. 기타안건 처리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3.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결의안

(10시 01분 개의)

### ● 의장 박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니다.

### 1. 경과보고

###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  
 결하신 바에 따라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  
 획심의위원회조례안이 같은날 조례심사소위  
 원회에 회부되어 해당 소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와 함께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로  
 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전체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

[제64회-제2차]

결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조례안**

(10시 02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소위원회 이기수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발언대로 나눔)

●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 이기수**

조례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간사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5인 위원이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1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회기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6월 20일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다음 날인 21일 회의를 갖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어서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위원 일동이 동조례안을

축조심사하고 조례안중 일부를 수정하였는데, 그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 수를 늘려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학계 전문가 지역대표등의 참여 폭을 넓히고자 하며 일부 표현이 부적절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전체 구성위원을 13인에서 15인으로 늘려, 이 중 위촉위원을 3인에서 5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기타 교육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참석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가 면밀히 축조 심사하여 수정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3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대한수정안 : 별첨4

(끝에 실음)

(이기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내용과 수정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께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청 관계관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본 건에 대해 조례심사소위원회 수정안과 교육감 제출 원안에 대하여 각각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예. 알았습니다.

전원,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셨으므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회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결의안

(10시 08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최근 정부의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 교육위원회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결연한 의지로 내외에 표명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전체 위원님들의 연명으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일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일환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일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조일환

조일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 일동이 공동 발의한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결의문을 11인 위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를 역행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위축시키는 교육부의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우리 충북도민과 교육가족들은 충격과 실망을 금할길 없습니다.

교육개혁의 성공적 활착을 위하여는 지역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 기능이 긴요함에도 이를 통·폐합하려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이

[제64회-제2차]

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또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 지역교육청은 단순한 교육행정 단위만이 아닌 지역 교육자치의 근간으로 지역주민의 교육 구심체이기도 합니다.

소규모 지역교육청의 통·폐합 계획이 특별시와 광역시의 지역교육청을 증대, 또는 규모확대의 합리화를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는 것은 가뜩이나 이농현상으로 피폐하여 가는 농촌에 절망감과 분노만을 더해 줄 뿐입니다.

또는, 지역교육청 통·폐합 계획에 반대하는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서 오늘 이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취지 결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결의문, 30여년만에 지방교육자치제가 부활된 이래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 일동은 내고장 교육자치의 확산과 기틀을 다지기에 일로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부의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계획에 대한 보도는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갈망하는 충청북도 도민과 1만 3천여 교육가족에게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 일동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착·발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세계화와 함께 도래한 지방화 시대를 이룩하려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활착을 위하여는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등 그 역할 기능이 긴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의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원동력을 실어 주고 격려는 못할 망정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교육행정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계획은 이에 막 출발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가닥을 잡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데도 차질을 빚는 등 시대착오적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 지역교육청은 단순한 교육행정 단위만이 아닌 지역교육자치의 근간으로 지역주민의 교육 구심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와 궤를 같이하는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은 시·군 통·폐합이 전제되지 않은 한 지방교육자치의 위축은 물론 지역간의 갈등과 주민 불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혜택의 폭을 좁히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적 혜택은 도시

나 농촌에 따라, 또는 인구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인구수의 산술적 평균치에 의한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소규모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이 특별시와 광역시의 지역교육청을 중설내지 규모확대의 합리화를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는 것은 가뜰이나 극심한 이농현상, 또는 피폐되어 가는 농촌에 절망감과 분노만을 더해 줄 뿐입니다.

차제에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지역교육청에 대한 과감한 교육재정의 지원 등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 지방교육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 일동은 지방화 시대를 역행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위축시키는 교육부의 소규모 지역교육청의 통·폐합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996년 6월 22일 충청북도교육위원 일동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정부 요로를 비롯한 각계 각처에 전달되어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문 : 별첨5

(끝에 실음)

(조일환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체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안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교육부등 관계부처와 언론 및 유관기관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의중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처리하셨으며, 특히 최근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이며 근시안적인 소규모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추진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을 결의하는 등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제64회-제2차]

주신 집행청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 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폐회)

○ 출석위원 : 11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 출석공무원 : 10명

부교육감 송영식,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관리국장 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행정과장 이상찬,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3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 별첨4
-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 : 별첨5

(별첨1)

# 議事日程(案)

第64回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96.6.20-6.22(3일간)

| 일시                                | 부 의 안 건   | 비 고    |
|-----------------------------------|---|--------|
| '96.6.20(목)<br>14:00<br><br>15:00 | <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 협의회(교육위원실)<br><br><input type="checkbox"/> 개회식<br><br><b>[제1차 본회의 개의]</b><br><br>1. 제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br>·회기 : 1996. 6. 20~6. 22(3일간)<br>2.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br>(제안설명)<br>3.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br><br><b>[제1차 본회의 산회]</b> |        |
| '96.6.21(금)<br>10:00~             |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br>o 조례심사소위원회  | 본회의 휴회 |
| '96.6.22(토)<br>10:00              | <input type="checkbox"/> <b>[제2차 본회의 개의]</b><br><br>1.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br>2.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결의안<br>3. 기타안건 처리<br><br><b>[제2차 본회의 산회]</b><br><br><b>※ 폐회</b>  |        |



(별첨2)

|           |                  |
|-----------|------------------|
| 의안번호      | 제 64-1 호         |
| 의결<br>일월일 | 1996.<br>( 제 회 )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       |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출년월일 | 1996. 6. 12. |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직예안

|          |      |
|----------|------|
| 의안<br>번호 | 64-1 |
|----------|------|

제출년월일 : 1996. 6. / 2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정사유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 (안 제2조).
  - 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하되 교육감소속 공무원중 10인의 당연직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3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함 (안 제3조).
- 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함 (안 제4조).
  -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회 의 (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토록 함 (안 제8조).
-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관계기관,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함 (안 제10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2조).

## □ 제정근거

-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 □ 조 례 안 : 덧붙임

## □ 참고사항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책서
-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시안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직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 공무원중 10인의 당연직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3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각 국장·기획감사담당관·초등장학과장·중등장학과장· 과학기술과장·행정과장 및 시설과장으로 하고, 이중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며 관 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③위촉위원은 교육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 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이하 "지방교육재정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

제7조(실무대책반)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6조, 제16조 및 제16조의2

□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운영조례』 시안

# 관계법령 발췌서

=====

## □ 지방재정법 (법률 제4,868호, '95. 1. 5.)

제6조(교육·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내무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각각 본다.

제16조(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하 "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의2(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운영조례』 시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교육청의 교육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시·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또는 관리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관리국장(서울·경기는 기획관리실장)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교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이첩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정기회의규정에서 정한 수일 전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제7조(실무대책반) ㉠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미리 검토하기 위해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내부도 의견교환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부별한 사유가 없거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への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3)

(제64회 임시회)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6. 6. 2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목 차

|                       |    |
|-----------------------|----|
| 1. 심사경과 .....         | 29 |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   | 29 |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 30 |
| 4. 토론 주요내용 .....      | 30 |
| 5. 심사보고 주요내용 .....    | 30 |
| 6. 심사결과 .....         | 30 |
| 7. 소수의견 내용 .....      | 30 |
| 8. 기타 필요한 사항 .....    | 30 |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년 6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1996년 6월 20일
- 다. 상정일자 : 1996년 6월 20일(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6년 6월 21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하되 교육감소속 공무원중 10인의 당연직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3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함(안 제3조).
- 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함(안 제4조).
  -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회의(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토록 함(안 제8조).
-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함(안 제10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축조심사하고 조례안중 일부를 수정함.

6. 수정안의 주요내용

가. 수정이유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수를 늘려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학계의 전문가, 지역 대표 등의 참여 폭을 넓히고자 하며, 일부 표현이 부적절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전체 구성위원을 13인에서 15인으로 늘려 이중 위촉위원을 3인에서 5인으로 함(안 제2조 제1항).

○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기타 교육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함(안 제4조 제4호).

다. 수정안 : 따로붙임.

7. 심사결과 : 수정의결(참석 5명, 찬성 5명).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별첨4)

|           |                   |
|-----------|-------------------|
| 의안번호      | 관련 제64-1호         |
| 의결<br>년월일 | 1996. 6.<br>(제 회)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       |              |
|-------|--------------|
|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
| 제안년월일 | 1996. 6. 22. |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      |           |
|------|-----------|
| 의안번호 | 관련 제64-1호 |
|------|-----------|

제안년월일 : 1996년 6월 22일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 1. 수정이유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수를 늘려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학계의 전문가, 지역 대표 등의 참여 폭을 넓히고자 하며, 일부 표현이 부적절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전체 구성위원을 13인에서 15인으로 늘려 이중 위촉위원을 3인에서 5인으로 함(안 제2조 제1항).

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기타 교육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함(안 제4조 제4호).

3. 수정안 : 따로붙임.

4.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증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항중 “13인의 위원으로”를 “15인의 위원으로”로 하고 “3인의 위촉위원으로”를 “5인의 위촉위원으로”로 한다.

안 제4조 제4호중 “기타 교육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
| 제1조 <생 략>   | 제1조 <원안과 같음>  |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u>13인의 위원으로</u> 구성 하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중 10인의 당연직 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u>3인의 위촉위원으로</u> 구성한다. | 제2조(구성) ① . . . . . <u>15인의 위원으로</u> . . . . .<br>. . . . . <u>5인의 위촉위원으로</u> . . . . . |
| ②~④ <생 략>   | ②~④ <원안과 같음>  |
| 제3조 <생 략>   | 제3조 <원안과 같음>  |
| 제4조(기능) 위원회는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이하 “지방교육재정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기능) . . . . .<br>. . . . .      |
| 1.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 1. . . . .  |
| 2. 채용조달에 관한 사항  | 2. . . . .  |
|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 . . .  |
| 4. <u>기타 교육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u>   | 4. <u>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u>   |
| 제5조~제12조 <생 략>  | 제5조~제12조 <원안과 같음>   |
| 부 칙 <생 략>   | 부 칙 <원안과 같음>  |

(별첨5)

|           |                   |
|-----------|-------------------|
| 의안번호      | 제 64-2호           |
| 의결<br>연월일 | 1996. 6.<br>(제 회) |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

|       |              |
|-------|--------------|
| 발의자   | 조일환 위원외 10명  |
| 발의년월일 | 1996. 6. 20. |

#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

|          |      |
|----------|------|
| 의안<br>번호 | 64-2 |
|----------|------|

발의년월일 : 1996년 6월 20일  
발 의 자 : 조일환 위원의 10명

## 1. 주 문

지방화 시대를 역행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위축시키는 교육부의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2. 제안이유

가. 최근 교육부의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계획에 대한 보도는 지방교육자치의 확산·정착을 갈망하는 충청북도 도민과 1만 3천여 교육가족에게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는 바,

나. 교육개혁의 성공적 활착을 위하여는 지역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 기능이 긴요함에도, 이를 통·폐합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다.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 지역교육청은 단순한 교육행정 단위만이 아닌 지역 교육자치의 근간으로 지역주민의 교육구심체이기도 하므로, 인구수의 산술적 평균치에 의한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라. 소규모 지역교육청의 통·폐합계획이 특별시와 광역시의 지역교육청을 증설 내지 규모확대의 합리화를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는 것은 가뜩이나 이농현상으로 피폐되어 가는 농촌에 절망감과 분노만을 더해 줄 뿐이므로,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지역교육청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 마련으로 지방교육활동을 활성화 하여야 할 것임.

## 3. 결의문 : 따로 붙임.

# 小規模 地域教育廳 統 · 廢合 反對

## 決 議 文

30여년만에 地方教育自治制가 復活된 이래 우리 忠淸北道教育委員 一同은 내고장 教育自治의 擴散과 기틀 다지기에 一路 邁進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最近 地方化 時代에 逆行하는 教育部의 小規模 地域教育廳 統 · 廢合 計劃에 대한 報道는 地方教育自治의 定着을 渴望하는 忠淸北道 道民과 1만 3천여 教育家族에게 衝擊과 驚愕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教育部의 計劃에 대하여 우리 忠淸北道 教育委員 一同은 反對의 立場을 분명히 하고 地方教育自治의 定着 · 發展에 대한 決然한 意志를 闡明하며 다음과 같이 決議합니다.

1. 世界化와 함께 到來한 地方化 時代를 이룩하려는 教育改革의 成功的 活着을 위하여는 基礎

自治團體 單位 地域教育廳의 적극적인 行政支援 등 그 役割 機能이 緊要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事實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地域教育廳의 教育改革 推進에 대한 原動力을 실어 주고 激勵은 못할 망정 基礎自治團體 單位의 教育行政機關을 統·廢合하려는 計劃은 이제 막 出發하려는 學校運營委員會가 가닥을 잡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데도 差跌을 빚는 등 時代 錯誤的이며 行政便宜主義的인 發想으로 즉각 撤回되어야 할 것입니다.

2. 基礎自治團體를 基準으로 한 地域教育廳은 단순한 教育行政 單位만이 아닌 地域教育自治의 根幹으로 地域住民의 教育求心體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基礎自治團體와 軌를 같이하는 地域教育廳의 統·廢合은 市·郡 統·廢合이 前提되지

않는 한 地方教育自治의 萎縮은 물론 地域間的의 葛藤과 住民 不和 등 심각한 副作用을 招來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地域教育廳의 統·廢合은 地域 住民의 文化的, 社會的, 經濟的 惠澤의 幅을 좁히게 될 것이 自明합니다.

또한 憲法이 保障하는 教育的 惠澤은 都市나 農村에 따라, 또는 人口數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질 수 없습니다.

人口數의 算術的 平均値에 의한 地域教育廳의 統·廢合은 결코 受用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小規模 地域教育廳의 統·廢合이 特別市와 廣域市의 地域教育廳을 增設내지 規模擴大의 合理化를 위한 方便으로 推進되는 것은 가뜩이나 극심한 離農向都 現象으로 疲弊되어 가는 農村에 絶望感과 憤怒만을 더해 줄 뿐입니다.

此際에 小規模 地域教育廳을 統·廢合하기 보

다는 오히려 小規模 地域教育廳에 대한 과감한 教育財政의 支援 등 特斷의 支援策을 마련, 地方 教育 活動을 더욱 活性化하여 農村地域의 열악한 教育與件을 더 이상 惡化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우리 忠淸北道 教育委員 一同은 地方化 時代를 逆行하고 地方教育自治를 萎縮시키는 教育部의 小規模 地域教育廳의 統·廢合計劃을 即刻 撤回할 것을 強力히 促求하는 바입니다.

1996. 6. 22.

忠淸北道教育委員 一同